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36 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 : 김 현 · 정동영 · 황정아

주철현 • 박정현 • 김 윤

박희승 · 최민희 · 문금주

이광희 • 정진욱 • 복기왕

이해민 • 민형배 의원

(14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은 그 업무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장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,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

것임(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 신설 등).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 제목 중 "설치 등"을 "설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 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조의2(심의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(이하 "심의위원"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(이하 "심의위원장"이라 한다)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심의위원을 상임(이하 "상임위원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 - ②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,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며,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 -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의3(심의위원의 위촉 등) ① 심의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·지명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위촉한다.

- 1.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3인
- 2.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3인
- 3.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
-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촉하여야 한다.
- ③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8조의4(심의위원장)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.
 - ② 심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,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.
 - ③ 심의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,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.
 - ④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,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⑤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

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

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"판사의 경우는"을 "판사 및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이 된 사람은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2, 제18조의4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(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을 본다. 이 경우 해당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	제18조(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
<u>치 등</u>) ① (생 략)	<u>치</u>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	<u><삭 제></u>
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심의위원	
회 위원장(이하 "심의위원장"이	
라 한다) 1인, 부위원장 1인을	
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	
<u>한다.</u>	
③ 심의위원회 위원(이하 "심	<u><삭 제></u>
의위원"이라 한다)은 대통령이	
위촉한다. 이 경우 3인은 국회	
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	
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	
을 위촉하고, 3인은 국회의 소	
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	
<u>람을 위촉한다.</u>	
④ 심의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	<u><</u> 삭 제>
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	
호선하고, 보수 등 처우에 관하	
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	
규칙으로 정한다.	
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	<u><삭 제></u>
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	

할 수 있다. 다만,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,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u><삭 제></u>

<u><</u>삭 제>

제18조의2(심의위원회의 구성 등)

①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 (이하 "심의위원"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심의위원 회 위원장(이하 "심의위원장"이라 한다)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심의위원을 상임 (이하 "상임위원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②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,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며, 보 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 <신 설>

-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의3(심의위원의 위촉 등)
 ① 심의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
 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
 추천·지명된 다음 각 호의 사
 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.
 - 1.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3인
 - 2.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 천하는 3인
 - 3.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
 -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촉하여야 한다.
 - ③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사고로 결원 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<신 설>

제18조의4(심의위원장) ① 심의위 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.

- ② 심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, 그 소관사무에 관하 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 을 건의할 수 있다.
- ③ 심의위원장은 국회에 출석 하여 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 며,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 야 한다.
- ④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,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 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 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 추를 의결할 수 있다.

제19조(심의위원의 결격사유) ① 제19조(심의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
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도는 지방공무원. 다만,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「법원조직법」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는 제외한다.

2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 (생 략)

,
1
<u></u> 판사 및 제18조의2제2항
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이 된
<u>사람은</u> .
2. ~ 6. (현행과 같음)
7.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
<u>라</u>
② (현행과 같음)